

유권자 권리

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예비선거 투표할 수 있습니다:

- » 등록 유권자이며 가입한 정당이 예비선거를 치르는 경우.
- » 선거일 오후 9 시 전에 투표소 안에 도착했을 경우.

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본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:

- » 등록 유권자일 경우.
- » 선거일 오후 9 시 전에 투표소 안에 도착했을 경우.

유권자는 모든 선거에서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:

- » 투표를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선거관리요원을 포함해 귀하가 원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단 귀하의 고용주나 노조대표는 제외.) 또한, 통역이 필요하시면 선관위가 특정 투표소에 배치한 통역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. 어느 투표소에서, 어떤 언어에 해당하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려면 866-VOTE-NYC 로 전화 문의하십시오.
- » 선거관리요원에게 투표방법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.
- » 투표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.
- » 투표소 유권자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없더라도 선서투표용지(affidavit ballot)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.

지 사는 주소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 처음으로 투표하는 것이라면,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- »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고 싶지 않으시다면, 귀하는 선서투표용지를 통해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.